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33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윤한홍ㆍ김상훈ㆍ이헌승

김종양 · 권성동 · 이종욱

서일준 • 주진우 • 송석준

김장겸 • 권영진 • 강민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있는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전통적 주력산업의 쇠퇴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의 역외 이전,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난립 등 산업입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의무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정비사 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기반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공업지역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 화 및 산업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단서 및 제44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공업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 2.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 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단서 신 ----. 다만, 국 설>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② (생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업지 역에서 실시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원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u>③</u>·<u>④</u>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 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 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 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 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 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 행할 수 있다.

2.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
<u>지역</u>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⑥</u> 제5항